

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

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(제2023-103호)에 따른
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9. 11.

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☐ 서류전형 합격자(3명)

모집 구분 (직종)	채용분야 (지원코드)	응시번호	연락처 끝자리
부산지방고용노동청 (청년인턴)	고용노동 (인턴01)	23090507	5501
		23090508	4098
		23090509	3424

2 면접일시 및 장소

☐ 면접일시: '23. 9. 15.(금) 14:00~

- 면접시간 20분 전 대기실 입장

☐ 면접장소: 부산고용센터 4층 세미나실
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(4층), 시청역 1번출구

※ 대기실: 부산고용센터 4층, 통계조사실Ⅱ

3 제출 서류

※ '23.9.13.까지 메일(jjin1215@korea.kr) 제출 (원서접수시 제출한 사람 제외)

* 메일 제목(예시):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(홍길동)

☐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(별지4호, 필수 제출)

☐ 우대요건(가점)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우대요건	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	증빙서류(제출 서류)
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	『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』제16조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9조 『5.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19조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의9	□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(국가보훈처 발급)
장애인	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제2조	□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, 상이군경 회원증 등 사본
저소득층	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제2조제2호,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	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	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	□ 한부모가족증명서 (주민센터에서 발급)
자립준비청년	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보호종료자	□ 보호종료확인서 (아동양육시설 발급)

4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

○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
※ 자격증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- 면접시험 대상자는 본인의 지정된 면접시험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면접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

※ 별도 또는 추가면접은 없음

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5 최종합격자 발표

☐ '23. 9. 22.(금)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(예정)

○ 문의처(담당자)

-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정혜진 (Tel : 051-850-6321)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3. . .

성명 : (서명)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